

제 185 조 (입소시설이용계약)

- ① 입소시설이용계약의 목적은 시설이용에 있어서 시설이용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수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 운영하도록 한다.
- ② 입소시설이용계약은 다음과 같이 이를 구분한다.
 1. 계약 및 기간
입소자의 입소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, 시설이용승인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마감일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도록 한다. 단,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,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.
 2. 계약의 해지
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사망, 퇴소,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인정기간 만료와 같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. 다만 계약기간 중 시설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중간퇴소의사가 있을 경우, 혹은 법정대리인으로 서 중간퇴소를 원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 3. 재계약
동 계약이 종료되는 시설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제반 상태와 가족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반 시설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상담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하며 시설이용자와 그 보호자의 퇴소요구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되거나 해가 바뀌어 보건복지부가 고지한 장기요양급여의 금액의 변동, 장기요양인정 등급갱신, 식사재료비 변동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.
- ③ 시설이용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에는 기본적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.
 1. 입소자명과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신원인수인명과 생년월일, 입소자와의 관계, 주소, 연락처
 2. 계약기간
 3. 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. 월 입소 비용, 서비스 기간, 계약목적, 면회, 외출 및 외박, 입원 등
 4.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
- ④ 시설이용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시설이용에 있어서 신원인수인명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1. 입소자에 대하여 대표 신원인수인은 가급적 1명으로 정하고 입소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신원인수인으로 한다.
 2. 신원인수인은 시설이용에 있어 입소계약서에 기재된 관련 비용이나 비 급여로써 지출한 비용 등의 입소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.
 3.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명이 변경되었거나, 신원인수인의 주소지, 연락처, 주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.
 4.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한다.
 5.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입소자의 건강, 생활, 이용 상의 문제를 문의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,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86 조 (이용절차)

- ①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~2등급, 시설 3,4,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하도록 한다.
- ②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: 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지사)하면 건강보험공단직원의 방문조사가 이뤄지고 등급판정 위원회가 개최되어 최종 등급을 판정하여 신청자에게 고지함으로 장기요양 신청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계획서를 수령하여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하는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입소 전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실시하며 입소일 전까지 입소자의 건강 상 간염,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입소 시 제출하도록 하며, 코로나 및 사스 등 중증 특수전염질환 발생으로 정부의 조치가 있을 시 그에 따라야 따라 입소 1일 전에 중증특수전염성 질환의 비 감염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입소 전에 시설에 제출한다.